

2023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3회 기간제 채용시험 추가 합격자 공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채용시험 추가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 최종 합격자

분야	추가합격자	응시번호
사무보조(일반)	1명	5번

2.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 제출기한 : 2023. 6. 23.(금), 18:00까지
- 제출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
 -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층 운영지원담당관실 / ☎ 02-6320-0286
 - 공무원 등록서류 재증 표기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나오도록 발급)
 -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1 참조]
 - ②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서식2 참조]
 - ③ 이력서 1부 [서식3 참조] *서면 및 e-mail 제출 ldh79@korea.kr
 - ④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 ⑤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
- ⑦ 사진(반명합판) jpg 파일 *e-mail 제출 ldh79@korea.kr

3. 기타사항

- 제출일시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2항을 준용하여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확인, 제출서류 허위·부정기재 사실 확인,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포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포기서[서식4]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 (02-6320-0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한 자)	()	사 진 (3cm × 4cm)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가슴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우: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우: ()
안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 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공수처, 인사혁신처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공무원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 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 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 력 서

인 적 사 항	사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E - Mail	
		주 소			

학 력	기간	출 신 학 교	전 공

자 격 면 허	자격증	기간	발급기관

경 력 사 항	기 간	기 관	담당업무

채용 포기서

구 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간제근로자		
응 시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우편번호 :)		
휴 대 전 화		e-mail	

위 본인은 () 사정으로 인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학업, 취업,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맨 아랫줄은 수신기관 표시